2023년 대구광역시 시회적기업 시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

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「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3. 1. 20.

대구광역시장

- O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13조 2항(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)
- 「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1조 제2항 (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)
- O 2023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

□ │ 사업내용

□ 지원대상

- O 참여자격 :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
- O 참여제외 기업
 -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
 -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
 - 유급근로자(자체 고용근로자)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
 -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·전부를 지원받는 기업

- ※ 정부지원금과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는 바우처 제공기관, 장기요양보험기관은 중복지원 아님.
-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
- 지원제외 대상
 - 대표자·등기임원 및 대표자·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
 - ① 대표자・등기임원의 배우자
 - ② 대표자・등기임원의 형제자매
 - ③ 대표자・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
 - ④ 대표자·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
 - (5) 대표자·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
 - ※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대상 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하나, 그 근로자의 친족도 등기임원의 친족으로 지원 제한
 - 사회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임의로 미가입된 자
 - ※ 국민연금 연령 제한 등 사회보험별 운영 정책에 따라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해 지원

□ 지원내용

- O 지원한도 : 기업당 월 50명 이내
- O 지원내용 :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의 일부(최저요율 기준)
- O 지원수준 : 4대 보험 모두 가입 당 월 206,050원
 - ※ '23년 적용 최저시급 9,620원,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임금의 10.25%
 - 고용보험은 1인당 월 23,110원(≒9,620원 × 209시간 × 1.15%)
 -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2.060원(=9.620원 × 209시간 × 0.6%)
 - 건강보험은 1인당 월 80,410원(≒9,620원 × 209시간 × 4.0%)
 - 국민연금은 1인당 월 90.470원(=9.620원 × 209시간 × 4.5%)

- ①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이상으로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· 산재·건강보험료(지원한도 115.580원)만 지원
- ② 만 65세 이상 취득으로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·직업능력 보험료만 부담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해당부분·산재·건강보험료(지원한도 97,490원)만 지원
- ③ 고용보험 이중 취득으로 해당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,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·건강·국민연금 (지원한도 182.940원)만 지원

□ 지원기간

- O 지원개시일로부터 최대 4년 (인증 익월부터 지원가능)
 -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 원칙이나,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가능
- O 월 중도 입·퇴사자는 해당 월 미지급

신청절차

- O 신청방법 : 보험료 납부 후 매월 15일까지 아래 제출서류 제출
- 제출방법: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을 통해 신청(서면접수 불가)
- O 제출서류

Ш

- 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
- ②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(계좌이체, 카드납부 내역,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)
- ③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(처음 신청 시, 통장 변경 시)
- ④ 월별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1부
 - ※ 고용·산재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, 건강장기 요양보험 납부확인서, 기타 근로자성 판단 및 보험료 확인을 위하여 기초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

- ⑤ 급여이체내역서 1부
 - ※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이체 내역
- 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1부
- ⑦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시업장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(최초 제출시) ※ 임금대장(자체 고용근로자 포함)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 필요
- O 신청기간 : 상시접수
 - ※ 각 구·군 예산 범위 내에서 상시접수하되 예산소요에 따라 접수기간 운영
-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SEIS)에 4대 사회보험 종류별 금액을 명확히 입력하여 신청
- 소재지 이전을 하려는 기업은 기존 소재지 기초자치단체에 이전하기 전의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(지급기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간 협의 가능)
- O 월 중도 입·퇴사자는 해당 월 미지급

□Ⅴ│ 기타사항

-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「2023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침」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,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제반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.
-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서는 반려합니다.
- 자세한 사업관련 사항은 구·군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대구광역시 창업진흥과 창업펀드팀 : ☎ 803-6475
- O 구·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

구 분	담당부서 연락처		주 소
중 구	구 일자리경제과 661-		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
동 구	경제정책과 662-2593		동구 아양로 207
서 구	경 제 과	663-2664	서구 국채보상로 257
남 구	시 장 경 제 과	664-2618	남구 봉덕로 61
북 구	일자리정책과	665-2684	북구 옥산로 65
수성구	성구 일자리경제과 666-4321 수성구 달구벌대로 24		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
달서구	일자리지원과	667-2541	달서구 학산로 45
달성군	일자리경제과	668-2653	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

- 대구권역 지원기관 (사)커뮤니티와 경제 : ☎ 956-5001(상시상담)
- 붙임 1.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.
 - 2.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.

[붙임 1]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

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[별지 제1호서식]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: 10일

(ㅇㅇ년도 ㅇ월분)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

□ 신청개요

최초 지원개시일	0.000.0	0.00.	지원만	료예정일		0000.	00.00.
기 관 명			대 표 자	(주민번호)		(-)
소 재 지			연락처	(휴대폰)			
인증번호			사업자	등록번호			
사업분야							
조직형태	1. 법령상 인정되는 조 □ 사단법인 □ 재단법 □ 공익법인 □ 비영리 □ 협동조합 □ 사회적 □ 영농·영어조합법인 2. 법령이외 인정되는 □ 법인으로 보는 단기	법인 □ 민법 비민간단체 [付협동조합 □ □ 농업·어 조직형태	□ 사회복지 □ 협동조힙 업회사법인	법인 □ 소년 연합회 □ 시 ! □ 기타 법	자생활협 회적협동	동조합 조합연합회	
인증(지정)유형	□ 사회서비스 제공형 □ 지역사회 공헌형(@ □ 혼합형 □ 기타형						
근로자수	□ 총 유급근로자수: □ 여성근로자수:	ප0 ප0		상 근로자수: 층 근로자수:			
계좌번호	(은행명)		예금주:				
구 분	적용대상인원(명)	지원기간	(개월)	지원금 4	시청액	실 납부	사회보험료
· 합 계	10-110 = 2 = (0)	7112172	(-112)	7,122			.,,_,
고용보험							
산재보험							
건강보험							
국민연금							
기타							

□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

	재 정 지 원 사 업 명	최초지원일	지원기간	지원연차
예비	일 자 리 창 출 지 원		~	
사회적	사 업 개 발 비 지 원		~	
기업	전 문 인 력 지 원		~	
0.17	일 자 리 창 출 지 원		~	
인증 사회적	사 업 개 발 비 지 원		~	
기업	전 문 인 력 지 원		~	
	사 회 보 험 료 지 원		~	

□ 중복지원 여부

구 분	부처(자치단체)명	지원받는 내용	지원기간	지원금액	비고
합 계					

*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 (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)

위와 같이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:

(서명 또는 인)

기초자치단체장 귀하

❖ 구비서류:

- 1.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(계좌이체. 카드납부 내역)
- 2.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(처음 신청 시, 통장 변경 시)
- 3. 월별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1부
 - * 고용산재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, 건강·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, 기타 근로자성 판단 및 보험료 확인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
- 4. 급여이체내역서 1부
 - *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이체 내역
- 5.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1부
- 6.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(최초 제출시)
 - ※ 임금대장(자체 고용근로자 포함)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 필요

❖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

- 1.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,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(휴대폰번호)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.
- 2. 사업참여 제한 대상(사업참여기업 대표자·등기임원의 배우자, 형제자매,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, 직계존비속)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.
- 3.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됩니다.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~500%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.

❖ 작성방법

1) 사업분야 구분

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·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

- 2) 최초지원일
 - 예비사회적기업: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
 - 인증사회적기업: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(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)
- 3) 지원기간: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
- 4) 지원연차: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
 - * 예시: 예비 1년. 예비 2년. 인증 1년. 인증 2년. 인증 3년
- 5) 중복지원여부: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(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)
 - * 예시: 사회보험료지원(두루누리사업)을 받을 경우

[붙임 2]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[별지 제1호의2서식]

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

1.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

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, 전문인력지원, 사업개발비,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(고용조정, 고용유지조치, 보험료, 임금체불 등)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,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1. 근로자가 4대보험에 누락없이 모두 가입되었나요	□예	□아니오
2. 4대보험료 체납이 있나요	□예	□아니오
3. 임금등 체불이 있나요	□예	□아니오
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, 형제자매,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, 직계존비속이 있나요 	□예	□아니오
5.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나요	□예	□아니오
5-1. 지원근로자 중 대표자, 등기임원 친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친족 등 참여자격 제한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을 아시나요	□예	□아니오
6.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나요	□예	□아니오
7.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나요	□예	□아니오

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* 사업참여 제한 대상(사업참여기업 대표자·등기임원의 배우자, 형제자매,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, 직계존비속)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.

대표자: (서명 또는 인)

2. 사업장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

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, 전문인력지원, 사업개발비,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(사업자등록번호, 법인등록번호 등)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 집·관리하고 있습니다.

- ·사업장정보의 수집·이용·목적: 참여자 선정·관리,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, 4대보험 가입이력 조회, 휴·폐업여부 조회, 임금체불 조회,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
- ·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: 사업자등록번호, 법인등록번호, 전화번호(휴대폰)
- ·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: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
- ·사업장정보의 제공: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,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

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·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(사업자등록번호, 법인등기부등본 등)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대표자 (서명 또는 인)

성 명	
주 민 등 록 번 호	-
전 화 번 호 (휴 대 폰)	